

제 900 호
1983. 4.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공 보 관 전 영 호
전 화 :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740 호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	3
제 1741 호 :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6
제 1742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가조례중개정조례	7
제 1743 호 : 서울특별시종합구관장상자금지급조례개정조례	8
◎ 훈 령	
제 590 호 : 서울특별시경찰조동수사대운영규정폐지규정	9
제 591 호 : 서울특별시경찰업무내부위임규정폐지규정	10
◎ 고 시	
제 20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0

< 이 면 계 속 >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85

제 20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1
제 203 호	: 하천골재채취허가내용고시	11
제 204 호	: 골재운반을위한선박의운항허가고시	12
제 20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	13
제 206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14
제 207 호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허가변경	14
제 20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제 20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16
제 21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6
제 21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고시	17
제 21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27
제 21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27
제 214 호	: 용마자연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28
제 215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변경	31
제 216 호	: 서린제 12 지구재개발사업제 3 개발자지정고시	32
제 21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32
제 218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3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35
제 219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16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36
제 22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37
제 22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37

◎ 공 고

제 202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50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 : 공람공고	38
제 205 호	: 케이, 에스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38
제 206 호	: 케이, 에스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39
제 207 호	: 열사용가자재제조업허가업체허가취소공고	39
제 208 호	: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에 따른 : 서류의공람공고	40
제 211 호	: 건설업 (전문공사) 견허취소	40
제 21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용의청사) 입안에 따른공람공고	41

◎ 동대문구청공고

제 29 호	: 동장직인개각공고	43
--------	------------	----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김 승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4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 75 조 및 동법 제 7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당등의 지급) ①시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전

문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 3 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 4 조 (심의배제사항) ①도시계획시행령 제 7 조의 2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

②도시계획개발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변경사항

제 5 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사무를 총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8 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특별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계장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0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 11 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12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구도시정비 자문위원회)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

에 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도시 계획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시 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인 이내)로 구도시정비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 14 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장이 일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
-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제 15 조 (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감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감사로 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9명 이내의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들 수 있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사무 보조원을 들 수 있다.

제 16 조 (단장의 임무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중에서 시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

원으로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 17 조 (임용,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 (자료제출 요구등)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진취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잡 칙

제 19 조 (시행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41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 영 " 이
라 한다)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의 설
치 ·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제 16 조 및 영제 5 조의 교통
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
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하여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 시
장 " 이라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며 위
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종합건설본부장
3. 보건사회국장
4. 산업경제국장
5. 건설관리국장
6. 교통국장
7. 경찰국장
8. 홍보관
9. 지하철건설본부장
10. 지하철운영사업소장
11.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12. 시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탄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
구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
과 서기 2 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국 운수 2 과장이 되
고 서기는 교통기획과 교통기획
계장 및 운수 2 과 지도계장이
된다.

제 6 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 부더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자료의 제출등) 시장은 관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단청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게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4. 1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 1742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결핵제 및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는 환자 및 가족제회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 당해 보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④ 제 3 항의 보급수수료는 항결핵제 및 피임약제 기구 보급시마다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 일까지 서울특별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수수료의 면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 및 녹색의료보호 수첩 소지자는 제 2 조 별표중 제 2 호, 제 3 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구판장 용자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4. 1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 1743 호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용자금지급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공판장 용자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구조 개선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합구판장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된 종합구판장 운영자금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구판장"이라 함은 유통구조 개선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입지 및 상품구성등 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회사 및 연쇄화 사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합구판장 설치계획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종합구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 (용자대상) 용자대상은 운영자등에서 운영자금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용자절차)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행을 지정하여 소요자금을 대하하고 지정은행장은 시장으로부터 용자대상자 및 금액을 통보받아 은행 일반대출절차에 따라 용자한다.

제 5 조 (이자율) 용자금의 이자율은 정부제정자금의 이율에 따른다.

제 6 조 (용자한도) 용자금의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 7 조 (용자금 상환) ①용자금을 지급받은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용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종합구판장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할 때

2. 운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종합구판장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정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독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합리적인 운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매월 운영실적을 익월 5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금설치) 유통구조개선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융자금울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승려한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종합구판장울 운영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종합구판장 운영을 종료할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제 9 조에 의한 기금으로 활용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초동수사대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 4. 13.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훈령제 590 호

서울특별시경찰초동수사대운영규정폐지규정

서울특별시 경찰초동 수사대 운영규정중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업무 내부 위임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 4. 13.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훈령제 591 호

서울특별시경찰업무내부위임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 경찰업무 내부 위임 규
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0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강동구잠실동 22-1 번지
16,845㎡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
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인
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편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회 및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
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4. 11.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잠실동 22-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잠실중학교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라. 사업규모 및 면적

· 기적 16,845㎡

· 건축면적 1,775.25㎡

· 연면적 6,756.7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983.5.1 - 1985.4.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
잠실 22-1	학교용지	16,84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없 음

아. 시행인가 설계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02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 1. 서울세고시제 171 호(82.4.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동고시 제 202 호(82.5.25)로 지적승인된 성동구 자양동 692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4.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자양동 69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양남국민학교 신축

다. 사업의 규모 : 면적 10.721㎡

연건평 12,805㎡(교사 1동 4층, 창고 2동)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1983. 4.

○ 준공 : 1985.3.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별첨생략)

사.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청면도 공사설계도서(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03호

하천골재채취허가내용고시

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하천골재채취를 허가하고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4.11

서울특별시장

1. 골재채취허가내용					
공구별	구 분			허 가 지 역	허가량
	허가자	수 허 가 자	하천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에 의한 양수자		
3 공구	서울특별시 별시장	서울특별시 별시장	현대건설(주) 대표 이 명 박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5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7	4,518천 [㎥]
5 공구	"	"	(주) 대 우 대표 김 우 중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서울 용산구 한남동 465	1,187천 [㎥]
<p>2. 골재채취허가기간 : 83.4.1-84.2.29</p> <p>* 채취허가량 및 기간은 한강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p>					
<p>○ 서울특별시고시제 204 호</p> <p>골재운반을위한선박의운항허가고시</p> <p>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제 25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p> <p>여 채취된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4.11 서울특별시장</p> <p>○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 허가 내용</p>					
공구	점용수허가자	점용위 치	점용목적	점용내역	
10	삼환기업(주) 대표 최 중 환	강동구암사동 613-1 앞 한강 (제 10 공구역내)	골재운반	에인선 - 4 대 토운선 - 6 대	
<p>○ 점용허가기간 : 1983년 3월 31일 - 1984년 2월 29일</p> <p>허가내용 및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p>					

○서울특별시고시제 20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

1.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취입 사항에 의

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1

서울특별시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및명칭	규모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결정고시일	지적고시일	비고
도봉구우이동 5 번지의 14 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	B= L= 225	사업시행 인가와 동 시	83. 12.30	건고2126호 (66.1.8)	건고2126호 (66.1.8)	대로 2류
	우이천상류교통광장 시설공사	B= 6 m L= 85			서고155호 (80.5.3)	서고193호 (80.6.4)	소로 3류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라. 위치도 및 평면도 : 별첨 (생략) . 끝.

토지조서 (우이천상류교통광장시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격 (m)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우이동 2	답	175	서울시		
" 4-9	도	1,967	"		
" 4-2	임	36	금강공업 (주)	종로구청운동 52-8	
" 5-10	도	4,674	서울시		
" 5-11	매	71	최한웅	종로구세종로 132	
" 16-10	도	2,318	서울시		
" 206-1	도	228	조봉말	동소문동 6 가 25	
" 206-3	도	83	서울시		
" 206-2	도	10	"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우이동 265	천	29,069	전 설 부		
" 266-2	도	6,216	국		
쌍문동 308-4	천	5,358			
" 309-1	임	64,463	미 등 기		
" 309-2	임	6,347	국		
" 309-3	임	3,570	국		

◎ 서울특별시고시제 206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강서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학교(경문고교 부지)	동작구사당동산 4-2 일대	35,213 ㎡	
변 경	"	"	35,690 ㎡	추가: 642 ㎡ 제척: 165 ㎡ (증) 477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7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3 호(76.6.17) 및 동고시제 377 호(82.9.14)로 사업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및 령

제 27 조의 2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2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종로구 구기동 151 번지의 3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운동장) 시행 (주) 미도파체육관시설공사</p> <p>다. 면적 및 규모 : 대지 7,359 ㎡ 건축 : 당초 350.54 ㎡ 변경 : 524.44 ㎡</p> <p>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23 (주) 미도파체육점 대표 유명집</p> <p>마. 사업의 착수, 준공년월일 당초 : 82.8.14 - 83.2.14 변경 : 82.9.14 - 83.12.14</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생략)</p> <p>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 인 주소, 성명 : 별첨 (생략)</p> <p>아. 공사설계도서 : 별첨</p> <p>자. 준공검사 : 도시계획법 제 85 조의 준공검사는 동법시행령 제 66 조의 3. (1) 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 7 조로 갈음한다.</p>	<p>(83.1.26) 로 지적승인된 보성중고 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 교)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도 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4.12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네 화동 1-1 번지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 교) 시행허가 보성중고등학교 시설증축공사</p> <p>다. 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37584.7 ㎡ 건축면적 - 1873.81 ㎡</p> <p>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서울시 종로구 네화동 1-1 번지 학교법인 동성학원 대표 김삼순</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공일 : 1983.4.15. 준공일 : 1984.1.30.</p> <p>바.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 소, 성명 : 별첨</p> <p>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 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 지 명세서 : 별첨</p>
<p>◎서울특별시고시제 20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523 호 (82.12. 17) 로 시설결정 및 동고시제 49 호</p>	

아. 준공검사: 도시계획법 제 85 조의 준공검사는 동법시행령 제 66 조의 3(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법제 7 조로 갈음한다.

자. 설계도서: 별첨(생략)함.

◎서울특별시고시제 209 호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7-5, 9, 10, 12, 13, 193-2, 3, 4, 5, 7, 9, 10, 11, 12호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 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4.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2. 사업주체: 도고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수영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3-2, 3, 4, 5, 7, 9, 10, 11, 12, 177-5, 9, 10, 12, 13

나. 건축연면적: 4,211.64 ㎡

대지면적: 3,700.58 ㎡

다. 규모: 연립주택 3층 3동 48세대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8	75	성내동192-5	성내동 193-13	
배지	소로							

◎서울특별시고시제 21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5 호(83.2.24)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2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특원	면장	기 점	총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315	정능동 16-12	돈암동 42-46	
"	"	3	6	200	" 181-7	길음동 853-3	
"	"	3	6	170	하월곡동 77-716	하월곡동 73-46	
"	"	2	8	310	길음동 1262-52	길음동 506-1	
"	"	3	6	156	" 503-60	" 501-1	
"	"	3	6	140	" 1262-102	" 1262-122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글.

◎서울특별시고시제 21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2493 호 (66.6.2) 및 동 고시 2498 호 (66.12.17)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69.1.18) 및 동 고시 30 호 (71.4.26) 등고시 제 349 호 (77.9.29)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46-29 ~ 상월곡동 28-118 ~ 산 6-7 외 3 개소에 대

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을 시행하고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부관색인에게 보인다.

1983.4.12
서울특별시관

사업명 구분	장월로개설공사	길음동 877-정능 10 간도로확장	상월곡동 24 주변도로확장	장석시장 - 화당 로간도로확장
가. 사업 시행지	장위동 246-29 ~ 상월곡동 20-118 ~ 산 6-7	길음동 877-19 ~ 5470-41 정능동 10-68	상월곡동 25-64 ~ 24-167	장위동 50-57 ~ 50-32
다.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 로) 시행 장월로개설공사	좌동 길음동 877 ~ 정능 10 간도로확장	좌동 상월곡동 24 주변 도로확장	좌동 장석시장 - 화당 로간도로확장

구분	사업명 장월로 개설 공사	길음동 877-정능 10 간도로 확장	상월곡동 24 수변도로 확장	장석시장 - 화랑 로간도로 확장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8m L=80m B=12m L=330m 옹벽 270m 하수도 160m	도로확장 B=6m L=105m B=8m L=240m 하수도 353m	도로확장 B=6m L=300m 하수도 165m	도로개설 B=6m L=60m 하수도 6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년월일 : 시행인가후 20일 이내 - 83.12.31
 바.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
 해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끝.

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

(장월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관계인 주소 성명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1	장위동 246-29	대	112㎡	장위동 246-109	이중조	가 등 기 가 등 기
2	장위동 246-418	대	22㎡	장위동 246-142 중구대평로 2가 340-700	이중조 이용인 김장현	
3	" 246-410	대	14㎡	석관동 254-3	이철호	대한애수교 장로교회 장성교회
4	" 246-413	대	92㎡	장위동 246-142	유목기 외 4인	
5	" 246-411	대	9㎡	장위동 252-31	대한애수교	장로교회 장성교회
6	장위동 246-423	대	4㎡	장위동 252-31	"	
7	" 246-414	대	86㎡	장위동 246-143	소병목	대한애수교 장로교회 장성교회
8	" 252-49	대	12㎡	장위동 252-31	"	
9	장위동 252-50	도	4㎡	"	"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이해관계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10	장위동 246-103	대	53㎡	장위동 246-107	조정현		
11	장위동 246-105	"	50 "	장위동 241-107	조정현		
12	장위동 246-415	"	77 "	장위동 246-107	조정현		
13	장위동 246-416	"	48 "	장위동 246-108	이무정		
14	장위동 246-412	"	106 "	장위동 246-104	김희순		
15	장위동 246-104	"	13 "	장위동 246-104	김희순		
16	장위동 269-3	"	186 "	마포구연남동 250-14	이석제		
17	장위동 268-8	"	29 "	중암동중암APT301호	이전연		
18	장위동 268-9	"	180 "	동작구노량진동 211-12	최봉선		
					성복구청	압	유
19	장위동 268-7	"	66 "	장위동 268-7	김영수		
20	상월곡동 37-1	"	24 "	하월곡동 77-525	김막동		
21	상월곡동 28-113	"	82 "	상월곡동 28-44	박종복		
22	상월곡동 28-114	"	3 "	상월곡동 28-45	김봉덕		
23	상월곡동 28-53	도	989 "	동대문구면목동 1203	김승희외2		
24	상월곡동 55-143	대	3 "	상월곡동 55-19	박원선		
				중구남대문로 2가11-1	한국상업은행	근저당	
25	상월곡동 55-144	"	178 "	동대문구계기동 137-2	윤한상		
26	상월곡동 55-145	"	24 "	상월곡동 55-37	손중선		
27	상월곡동산 6-4	임야	489 "	중구율지로 2가 25	김동수		
				중구율지로 2가 25	김동희		
				종로구관철동 270	김창환	가처분	
				의정부시가외동 43	장영자		
				용산구보광동 207-2	김영환		
				종로구관철동 270	김영환		
				안암동 5가 110-45	한정옥		
				종로구관철동 270	김구환		
				삼선동 2가 45	김구환		
				"	홍필선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이해관계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28	상월곡동산 6-7	임야	897㎡	영등포대방동 4-12	김찬욱		

공사건물가액조서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장위동 246-142	세멘부르크 와즙, 주택	17㎡	장위동 246-242	박재성의 6인	
2	장위동 246-129	세멘부르크 스레트즙 주택	4㎡	장위동 246-129	김상기	
3	장위동 246-143	세멘부르크 조와즙 주택	25㎡	장위동 246-143	소병복	
4	장위동 246-107	목조 양 와즙, 주택	36㎡	장위동 246-107	조정현	
5	장위동 268-3	세멘부르크 즙 주택	5㎡	장위동 268-5	이전언	

공사토지가액조서

(길음동 877-정릉 10간)

번호	소재지	지목	수량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1	성북구길음 535-26	대	101㎡	성북구길음 535-4	일신상사주식회 사의 106인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소재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2	성북구길음 535-27	대	27㎡	성북구길음 535-4	일신상사	
3	" 536-44	"	39㎡	536-6	주식회사	
4	" 536-45	"	8㎡	종로구명륜동 3가 90	어운철	
5	" 536-46	"	37㎡	성북구길음 547-87	김문현	
6	" 536-47	"	8㎡	" 536-19	이당구	
7	" 536-48	"	8㎡	" 536-19	박장업	
8	" 536-49	"	17㎡	" 536-22	황정순	
9	" 536-50	"	15㎡	" 536-25	이종범	
10	" 536-51	"	19㎡	" 536-26	김성환	
11	" 536-52	"	6㎡	" 537-95	유언형	
12	" 536-53	"	3㎡	" 536-31	조현기	
13	" 536-54	"	7㎡	" 536-33	임상금	
14	" 536-55	"	21㎡	" 536-41	조명현	
15	" 547-172	"	14㎡	" 536-13	조구남	
16	" 547-35	"	7㎡	마포구노고산동 49-45	최정래	
17	" 547-173	"	20㎡	성북구길음 547-42	김영환	
				근저당설정(1천6백만원)	노봉연	
				영등포구영등포동 640		
				조선맥주주식회사		
18	" 547-174	"	30㎡	성북구길음 547-43	홍자춘	
19	" 877-250	"	7㎡	동대문구면목동 281-6	김삼복	
20	" 877-251	"	21㎡	성북구길음 877-193	최두철	
21	성북구정능 966-117	"	57㎡	" 정능 966-38	이	
22	" 13-15	"	31㎡	" 길음 535-4	김용덕	
23	" 13-16	"	33㎡	" 길음 13-6	김영권	
24	" 13-5	"	13㎡	" 정능 13-5	김영권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5	성북구정릉 10-320	대	12㎡	성북구정릉 10-40	최동렬	
26	" 10-328	대	26㎡	" 10-39	박영진	

공사 건물 조서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 면적	소유자		성명	비고
				주소	소		
1	성북길음 547-43	세멘부력 세멘와즙 영업	15㎡	성북구길음 547-43		유원호	
2	" 536-25	목조와즙 주택	11	536-25		김성환	
3	" 536-26	목조와즙 성가진주택	15	536-26		유언형	
4	" 536-27	목조와즙 주택	11	536-17		신석영	
5	" 536-6	목조와즙 평가진주택	9	536-6		여운철	
6	" 536-6	"	8	536-6		"	
7	" 536-8	목조와즙 주택약국 점포	9	547-87		이상구	
8	" 536-8	"	21	"		"	
9	" 536-19	목조콘크리트 와즙평옥개 점포	7 ①층 7 ②층	536-18		황정순	
10	" 536-33	목조와즙 평가진주택	7	536-33		조명현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적 (㎡)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제인주소성명		
9	성북구길음동 536-29	목조와즙 평가건축 택	8	길음동 537-95	조현기	
10	• 536-31	•	6	• 536-31	임상금	
11	• 536-13	•	9	• 536-13	김순도	
12	• 536-28	•	8	은평구신사동 12-2	이경순	
13	• 536-41	목조와즙 주 택	28	길음동 536-41	조무남	
14	• 877-188	목조와즙 근린생활 시 설	2.9	• 547-87	이상구	
15	• 877-191	목조와즙 점 포	5	정능 11-5	최영태	
16	• 877-192	세면부력 세면와즙 점포주택	22	동대문구면목동 181-6	김삼봉	
17	• 877-193	세면부력 세면와즙 주 택	3.5	길음동 877-193	최두형	
18	성북구정능 966-38	목조와즙 집포주택	34	정능 966-38	이강길	
19	• 13-15	철 근 콘크리트 평 우 개 점 포	1 층 24 2 층 24	• 13-7	김용덕	
20	• 10-39	목조와즙 주 택	6	정능 10-39	박영진	

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

물건지조서 (상월곡동 24)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유자 주소 설명		비고
				관제인주소 설명		
1	상월곡동 26-44	대	2	동대문구이문동 264-73	신건업	
2	" 25-74	대	47	용산구갈월동 68	일신빌딩 주식회사	
3	" 25-73	대	23	상월곡동 25-65	김상명	
4	" 25-71	대	59	상월곡동 25-56	강동문	
5	" 25-72	대	6	"	"	
6	" 26-47	대	74	상월곡동 26-3	김준기	
7	" 26-48	대	10	"	"	
8	" 24-293	대	30	상월곡동 244	허노인	
9	" 24-69	도	30	상월곡동 24-244	홍은균	
10	" 24-252	도	26	상월곡동 24-242 남대문 2가 111-1	이진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근저당
11	" 24-253	도	20	동대문구창신동산 6	이희정	
12	" 25-254	도	13	양주군화도면북현리 212	이상옥	
13	" 24-295	대	36	상월곡동 24-14	허노인	
14	" 24-296	대	2	상월곡동 24-150	김제환	
15	" 24-297	대	6	동대문구용두동 133-17	김제만의 1	
16	" 24-298	대	11	상월곡동 24-153	임영길	
17	" 24-299	대	3	상월곡동 24-17 장위동 65-71	구자숙 장일신용 금 고	근저당
18	" 24-300	대	23	"	"	
19	" 24-301	대	5	미아동 455	이덕영외 1	
20	" 24-317	대	16	상월곡동 24-17 장위동 65-71	구자숙 장일신용금고	근저당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제인주소성명		
21	상월곡동 24-316	대	1	상월곡동 24-17	구자숙	근저당
				장위동 65-71	장일신용금고	
22	24-315	대	16	상월곡동 24-18	이병주	
23	24-183	도	7	상월곡동 24-17	구자숙	
24	24-161	대	3	동대문구용두동 193-17	김재만	
				성북구미아동 415	이억영	
25	24-302	대	24	.	.	
26	24-314	대	1	.	.	
27	24-313	대	3	.	.	
28	24-312	대	21	상월곡동 24-175	노영철	근저당
				동대문구청량리동 23-6	미우상호	
					신용금고	
					주식회사상업은행	근저당
					(이분동지점)	
29	24-303	대	11	동대문구용두동 193-17	김재만	
				성북구미아동 455	이억영	
30	24-304	대	4	.	.	
31	24-311	대	19	상월곡동 24-176	김종희	
32	24-310	대	3	동대문구용두동 133-17	김재만	
				성북구미아동 455	이억영	
33	24-309	대	14	상월곡동 24-187	박용희	
34	24-308	대	21	장위동 68-63	도춘자	
35	24-307	대	10	동대문구용두동 153-17	김재만 외 1	
36	24-306	대	79	상월곡동 24-81	박성하	
37	24-305	대	1	국 (문화재관리국)		

공사건물가격조서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제인주소성명		
1	상월곡동 25-64	철근콘크리트평옥개연와조새멘와즙평가건포	23	상월곡동 25-65	김상명	
2	상월곡동 24-17	부록크와즙주택	29	상월곡동 24-17	구자숙	
3	상월곡동 24-18	부록크와즙주택	29	상월곡동 24-185	김청백	
4	상월곡동 24-175	새멘부록크새멘와즙주택	24	장위동 246-94	신동기	
5	상월곡동 24-176	연와조새멘와즙부록크평가	33	상월곡동 24-176	김병희	
6	상월곡동 24-187	건주택연와조새멘와즙주택	15	상월곡동 24-187	박용희	
7	상월곡동 24-178	연와조새멘와즙주택	14	가회동 11-60	박성복	

공사토지가격조서

물건지 조서 (장석시장 - 화랑로간 도로확장)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제인주소성명		
1	장위동 50-66	대	8	동선동 4가 303-3	송완근	
2	장위동 50-68	대	146	"	"	
3	장위동 50-70	대	44	중구무교동 95	삼영무역주식회사	가동기
4	장위동 50-71	대	129	상월곡동 29-39	이필선	
5	장위동 50-56	대	3	석관동 233	황하백	

◎서울특별시고시제 21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8 호 (82.1.15)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관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안암동 5 가 1 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고려대학교시설확충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 582,326

2) 사업변경

가) 기 준

건축면적 : 37,719.5 평방미터

연 면 적 : 138,008.06 평방미터

동 수 : 71 동

용 도 : 교사 및 부대

시설

나) 변경후

건축면적 : 38,017.5 평방미터

연 면 적 : 142,140.31 평방미터

동 수 : 76 동

용 도 : 교사및부대시설

다) 변경내용 (금회허가분)

• 건축면적 : 798 평방미터

• 연 면 적 : 4,132.25 평방미터

• 동 수 : 1 동신축 (지하 1 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용 도 : 교사 (법과대학)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성북구안암동 5 가 1

성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 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3.12.31

바. 위치도및계획평면도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 토지

별첨과 같음 (생략)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수용할

토지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21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86 호 (81.10

27)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지적승인되고 동고시 제128호(82.3.29)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성북동 산 226-220의 3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3.4.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성북구성북동 226-220의 3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 서울명수학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당초면적 및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25㎡
 - 나. 변경면적 및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38.40㎡
 4.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 279-2
서울명수학교장 최 경 문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공 :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 나. 준 공 : 1986.12.30
 6. 사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생략) 끝.
-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214 호

용마자연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1호(81.12.31)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40호(83.1.24)로 지적승인된 용마자연공원조성계획중 망우시설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의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3

서울특별시장

- 가. 공원조성계획(망우구역)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별첨)

가. 조성계획 총괄표 (망우지구 공원시설구역)			
(단위 : ㎡)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비고
휴양시설	노인정	342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1 모험놀이시설 1	6,875	
운동시설	수영장, 로라스케이트, 경구장, 궁도장	19,277	
교통시설	광장, 도로	기정 4,222 기변 7,827	증 3,805 ㎡
편의시설	주차장, 식당, 예접 탈의실, 간이식당	기정 5,317 기변 4,867	감 450 ㎡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배표소, 창고, 급수탱크	750	
조경시설 기타	잔디광장 녹지기타	기정 124,369 기변 121,214	감 3,155 ㎡
계		161,152	

나. 시설조사 (망우지구) (단위 : ㎡)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규모(㎡)		구조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5	노인정	입구광장부근	342	121	121	콘크리트 위치변경
	6	어린이놀이터	입구광장부근	1,575			
유희 시설	23	모험놀이터	산 69-1 청구 장 동측	5,300			구조변경
	19	수영장	묘역 남측	8,643			
운동 시설	22	로라스케이트장	"	1,198			조적 조퇴치변경
	18	궁도장	수영장상단	900	64	64	
	1	경구장	묘역 북측	8,536			

44-30 제 960 호

시

보

1983.4.9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통 시설 면이 시설		도 로		기정 2,899 변경 6,504				증 : 3,605	
	2	광 장	묘역 서측	1,323					
	4-1	주 차 장	입구 광장	1,825					
	4-2	"	베니스장입구	900					
	4	휴 게 실	수영장입구	900	132	132	콘크리트	위치변경	
	9	매 접	수영장내	42	21	21	조 석 조		
	15	탈의실보관소	"	700	350	350	"		
	20	간 이 식 당	"	260	128	128	콘크리트		
	17	탈 의 실	정 구 낭 대	240	119	119	조 석 조	매점사위 장 포함	
	관리 시설	7	관리사무소	입구 광장	360	180	180	콘크리트 리 트	
		10	매 표 소	수영장입구	15	6	6	조 석 조	위치변경
		24	창 고	로라스케이트 장	150	72	72	"	
		16	수 도	산 69-1	225	225	225	철 근 콘크리트	급수탱크 (지하)
조경 기타	2-1	잔디광장 녹지기타	수영장남단	1,398 기정 123,321 변경 119,815				감 : 3,705	
계				161,152	기정 1,746.5 변경 1,418	기정 1,746.5 변경 1,418		감 : 328.5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다. 도로조치

구분	종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시 점	종 점
기정	소로	3	1	4-6	120	600	입구광상	수영장
변경	"	3	1	6	170	1,020	"	"
폐지	"	3	2	6	60	360	테니스장입구	테니스장입구
신설	"	3	2	5	190	950	"	망우국교입구
기정	"	4	1	4	140	560	산 69-1	잔디광장남단
변경	"	4	1	4	250	1,000	"	"
신설	"	4	2	4	270	1,080	테니스장입구	테니스장 북측
기정	산책로	1	2	2	160	320	산 69-1	공설장입구
"	"	2	2	2	50	100	공설장입구	공설장하측
"	"	3	2-3	110	275	기년탑	공설장하측	공설장하측
변경	"	3	2-3	140	350	"	공설장하측	급수탱크
"	"	4	1.5-2	85	129	공설장하측	"	테니스장입구
"	"	5	2-3	90	135	"	"	모험놀이터
"	"	6	1.5-2	80	140	산책 5	"	"
변경	"	6	"	110	660	"	"	"
기정	"	7	1.5-2	80	140	정구장	"	잔디광장
변경	"	7	2	110	220	"	"	모험놀이터
기정	"	8	1.5-2	80	140	입구광장	"	묘역
변경	"	8	4	135	540	"	"	"
합계						기정 : 2,829 변경 : 6,504		

◎서울특별시고시제 215 호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390호(81.10.28)로 시행허가하고 고시한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25 조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4.13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도봉구공릉동 215-1, 4, 산 30-1, 3, 4, 산 32-1, 산 33-1, 2, 산 37-1, 3, 5, 산 38, 산 39, 산 40-1, 2, 산 41-1, 2, 산 44-1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명칭 : 종합의료시설
- 3) 사업의 규모 : 47,805㎡
- 4) 사업시행자 : 한국에너지연구소장
차 종 회
- 5) 사업시행기간
착 공 : 1981.10.28
준공예정일 : 1986.12.31
-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생략

- 1, 35-2, 35-4, 36, 38, 39-2, 39-3, 40, 41-1, 41-2, 41-3, 41-4, 42-1, 42-3, 42-6, 42-9, 42-10, 42-12, 43-1, 44-2, 55, 55-2, 56, 57, 58, 59, 60, 60-4, 64, 65, 66
(계 49필지)
- 3) 시행면적 : 7,636.4㎡
- 4) 시행자 :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 사장 이우룡
- 5) 시행자의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142
- 6) 시행인가신청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서울특별시고시제 216 호

서린구역제 12 지구재개발사업 제 3 개발자지정고시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 46 호 (80.2.12) 로 사업계획결정된 서린구역 제 12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1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제 3 개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한다.

1983. 4. 14

서울특별시장

가. 제 3 개발자 지정내용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서린제 12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종로구서린동 1-2, 1-11, 3, 4, 5, 6, 7, 14, 23, 27, 28, 30-3, 33, 34, 34-1, 34-2, 34-4, 34-5, 35

○서울특별시고시제 21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71.4.7) 및 서울특별시 고시 208 호 (73.12.14) 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토목과 또는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83. 4. 14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위치 : 강동구성내동 120-30-25-13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 다. 사업규모 : 폭 15m연장 410m 포장 38.4㎡
하수도 D=600 mm
L=782.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별첨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 부터 83.12.31	사. 토지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 성명 : 별첨
바. 사용토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시 설 조 서

공 사 명 : 성내동 292-269 간 도로포장공사
 공사개요 : 폭 15m 연장 410m
 포장 38.4a 하수도 D=600mm L=782.5m

○ 도 로

등 급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중로 2류	15m	410m	성내동 120-30	성내동 275-13

○ 하수도

직 경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D=600mm	782.5	성내동 120-30	성내동 275-13	

토 지 세 목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존 (㎡)	저 목 토 지 년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내동	120-30	대	1,716	1,716	성동구금호동 4 가 233-39	공 적 명
"	125-12	대	12	12	성북구성북동 37-24	김석희외 2인
"	125-13	대	23	23	"	"
"	126-6	대	149	149	"	"
"	126-3	도	136	136	국 유 지	
"	29-1-21	대	440	440	도봉구미아동 317-7	원 덕 기
"					동대문구면목동 368-25	윤선영외 2인 (가등기)
"	293-1	잡	1,994	1,994	성동구구의동 28-58	반 석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저목토지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내동	292-34	도	164	164	동대문구면목동 377-50	실 종 속 동 한 주 택 (최정덕)
"	271	잡	183	183	중구남대문 4가 17-12	
"	273-6	전	870	870	"	
"	273-5	전	10	10	"	
"	271-5	잡	2	2	"	
"	272-3	전	660	660	"	
"	275-13	전	445		수원시우만동 293-1 성북구점 등동 780 산장아파트나 505호	임 송 혁 이 원 현 (가등기)

건 물 세 목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소재지	지 번	구 조	건 명	저축건물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내동	120	철근콘크리트평옥개	1137.12㎡	12㎡	한 덕 물 산 (주)	
"	120-30	세멘트부력조와즙	49.59	49.59	"	
"	"	연 와 즙 스투트	73.45	73.45	"	
"	"	세 멘 연 와 즙	13	13	"	
"	292-29	연 와 조 평 옥 개	79.8	3	성내동 292-19	정 여 진
"	292-8	"	97.69	1	292-8	김 태 수

지 장 물 조 서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지 장 물 명	지 번	저축길이	소 유 자
담 장 화장실, 장독대	292-30	14 m	성내동 292-30 흥택선
담 장 화장실, 대 문	292-20	14	성내동 292-20 김영언
"	292-19	14	성내동 292-19 정여진
"	292-8	6	" 292-8 김태수

지 장 물 명	지 번	지속권이	소 유 자		
아파트살입구, 기동 담 장	271 12030	1 84	해바라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덕 물 산(주)		
<p>○서울특별시고시제 218 호 마포로제1구역제31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p> <p>1. 건설부고시 제 345 호 (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146 호 (80.5.19)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31 호 (83.3.8)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 제1구역 제31 지구에 대하여 도시지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4. 14 서울특별시 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가. 사업의 명칭 : 마포구제 1 구역 제 31 지구 재개발사업</p> <p>나. 시행구역 : 마포구도화동 292-1 외 1필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p>					
다. 시행면적 : 1,895.7㎡	라. 대지면적 : 1,696.2㎡	마. 공공시설 부담면적 : 199.5㎡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의 가로서 확정함)		
건축율 : 45% 이하	용적율 : 670% 이하	주용도 : 업무시설	배 열 : · 전건도로에서 3미터 이상 후퇴 · 측면도로에서 1.5미터 이상 후퇴		
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 시행기간	자. 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마포구도화동 532 번지	1983. 4. 14 ~ 1985. 4. 30	마포구도화동 532 번지	거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동수		
거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동수	김형목	김충			
가. 소 지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리 자
마포구도화동	292-1	대	1,696.2	거성종합건설주식회사	김형목
마포구도화동	292-6	개	199.5	박 인 충	없 음

◎서울특별시고시제 218 호

마포구제 1구역제 16지구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4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146 호 (80.5.19) 및 서울특별고시 제 470 호 (82.11.22) 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 제 1구역 제 16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2 조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3. 4. 15
서울특별시장

다 음

-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제 1 구역 제 16 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마포구도화동 16-7 외 2필지 토지

- 다. 시행면적 : 2,071.2 ㎡
- 라. 대지면적 : 1,824.5 ㎡
- 마. 공공시설부담면적 : 246.7 ㎡
-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허가로서 확정 함)
진폐율 : 45% 이하
용적율 : 450 %
층 수 : 10 층 이하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열 : 전면도로에서 6 미터 이상 후퇴
- 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중구서소문동 120-23
- 아. 시행기간 : 1983.4 - 1985.4.30
- 자.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중구서소문동 120-23

동 아 건 설 산 업 (주)

대표이사 임 원. 수

-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 소	성 명	
마포구도화동 16-7	대 지	1,794.38 ㎡	중구서소문동 120-23	동아건설 산업 (주)	근저당권자 (주)서울신탁은행
" 16-8	"	30.1 ㎡	"	"	"
마포구마포동 324-4	"	246.7 ㎡	"	"	없 음

오 기 록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마포구도화동 16-7	117.05평	중구서소문동 120-23	동아건설 산업(주)	근저당권자 (주) 서울신탁은행			
<p>◎서울특별시고시제 220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p> <p>1. 고시 제 134(83.3.9) 호로 결정 및 고시제 167 호 (83.3.23) 로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p> <p>가. 도시계획 시설(도로)지적 승인조서</p>					<p>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련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3. 4. 15.</p> <p>서울특별시장</p>		
구 분	동 급	류 별	확원(M)	연장(M)	기 점	중 점	비 고
신 설	소 로	3	6	270	금호3가 1464	금호3가 1345-2	기적적 승인 L = 260M 금회시적 승인 L = 10M
<p>나. 결정 도면 별첨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221 호</p> <p>=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p> <p>1. 서울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공원)중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 (82.7.19) 호 및 동고시 제 381 (82.9.16) 호로 재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 87 호 (83.3.14) 에 의거 변경 결정된 백련, 공동공원 계획에 따라</p>					<p>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9 조 제 3 항 및 제 6 조 제 1 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p> <p>1983. 4. 15</p> <p>서울특별시장</p>		

가.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조서					
공원종류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근린공원	백련공원	서대문구 홍은동, 은평구 용암동		1,321,400	
"	·강동공원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123,000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과 같음(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02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50 지구 재개발사업
 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보고

1. 건설부고시제 345 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146 호(80.5.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92 호(83.2.17)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 제 1 구역제 50 지구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과제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4. 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칭 : 마포로제 1 구역제 50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마포구동덕동 256-37 번지의 10 필지

다. 시행면적 : 2,581.1 ㎡

라. 대지면적 : 2,312.2 ㎡

마. 공공시설부담 면적 : 268.9 ㎡

바. 건축계획(규모 및 용도는 건축허가로서 확정 함)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율 : 670% 이하
- 층 수 : 16 층 이하
- 주용도 : 업무시설
- 배 열 : 전면도로에서 4 미터 이상 후퇴

- 사. 시행자 : (주) 엘리트 대표이사 정성모
- 아. 시행기간 : 1983.5-1983.12.30
- 자. 공람기간 : 1983.4.9-1983.5.8
- 차.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재개발과(720-2704)

◎서울특별시공고제 205 호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케이, 에스표시 정지처분 한바있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3. 4. 11

서울특별시청

- 허가번호 제 1316 호
- 허가일자 76.6.4
- 제조업체 성광조명기업(주)
- 대표자 박승운

<p>소재지 마포구신정동 73-1 규격번호 KSC7604 품명 고압수온밸프 종류·등급 HF 400 처분일자 83.1.11 해제일자 83.4.11</p>	<p>대표자 최종환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5가4 규격번호 KSC3108 품명 폴리에스널동선 종류·등급 1종 0.5mm 처분일자 83.1.10 해제일자 83.4.10</p>					
<p>◎서울특별시공고제 206 호</p> <p>케이에스·표시 정지처분해제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케이·에스표시 정지처분한바 있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p> <p>1983. 4. 11 서울특별시장</p> <p>허가번호 603 허가일자 71.12.13 제조업체 효성중공업(주)</p>	<p>열사용기자재제조업허가업체허가취소공고</p> <p>◎서울특별시공고제 207 호</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3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업체에 대하여 그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p> <p>1983. 4. 12 서울특별시장</p>					
<p align="center">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취소내역</p>						
허가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	위반내역	관련근거	조치사항
서울제 33호	태왕보일러	구로구독산 612-2	이기표	보고미필, 무단제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 조 5항	허가취소
서울제 75호	동진건설 공업사	구로구계봉동 353-9	유명재	"	"	"

허가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	위반내용	관련근거	조치사항
서울제 173	일강주식회사	구로동 926, 927, 948	김봉환	보고미필유지 기간경과후 재신고미필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 23조 5항	허가취소
서울제 217	삼미보일러	은수동 100-16	김영조	보고미필 무단폐업	"	

◎ 서울특별시공고제 208 호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공고

1. 당시 고시제 282 호 (81.7.27) 로
도시계획시설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
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동대문구
상봉동 83-1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
획사업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의 2 에 의거 14 일간 일반인에게
노인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기 바람.

1983. 4. 12

서울특별시 장

사업의명칭	위치	사업내용	시행자	공람기간	공람장소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 자동차정류장)	동대문구 상봉동 83-1 일대	대지 : 36,364㎡ 건물 : 13,214.24㎡ (지하 1 층, 지상 3 층)	주식회사 : 신아주 대표이사 : 백문기	83. 4. 14 83. 4. 27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기타 상세한내용 및 의견은 교통기획과 (725-6716) 에 문의 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211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

다음 업체는 국세징수법 제 7 조
제 4 항 및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8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
기 건설업법 시행령 제 37 조에 의하
여 공고한다.

1983. 4. 12

서울특별시 장

구분	폭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변 경	20m	12m	번동 446-8	번동 446-8	가 각 천 계	
	15 "	12 "	공룡동 661-10	공룡동 661-10	"	
	15 "	12 "	" 553-3	" 553-3	"	
	15 "	12 "	" 657-8	" 657-8	"	
	15 "	12 "	" 657-7	" 657-7	"	
신 설 제 지 변 경 신 설	8 "	210 "	쌍문동산307-1	쌍문동 532-20	위 치 변 경	
	8 "	40 "	중계동 556-2	중계동 556-2		
	6 "	387 "	수유동 270-1	" 270-141		
	10 "	138 "	중계동 440-36	" 236-9	위 치 변 경	
	6 "	48 "	" 142-26	" 451-1		
	6 "	260 "	상계동 173	상계동 156-191		
	6 "	145 "	" 169-191	" 156-191		
	6 "	150 "	" 155-12	" 172-81		
	6 "	40 "	중계동 93-4	중계동 93-2		
	6 "	104 "	" 90-1	" 90-44		
	6 "	170 "	" 90-43	" 90-31		
	6 "	236 "	" 90-31	" 54-1		
	6 "	483 "	" 68-14	" 37-3		
	6 "	195 "	" 58-60	" 62-1		
	6 "	136 "	" 37-3	" 37		
	6 "	130 "	상계동 1132-32	상계동 1117		
	6 "	170 "	" 1116-16	" 119-9		
	6 "	180 "	" 1116-14	" 1121-16		
	변 경	8 "	180 "	공룡동 431-5	공룡동 435-2	위 치 변 경
	제 지	6 "	82 "	미아동 48-17	미아동 48-9	
신 설	30 "	30 "	월계동 68-3	월계동 68-5		

<p>◎ 동대문구공고제 29 호</p> <p>직 인 개 각 공 고</p> <p>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 조, 제 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을 개각하였기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 고 한다.</p> <p>1983.4.11 동 대 문 구 청 장</p> <p>1. 직인명 ○ 개각: 답심리 제 2 동장인</p> <p>2. 사용개시 및 구인 폐인일자 : 1983.4.15</p> <p>3. 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령</p> <p>◎ 1983 년 4 월 11 일자 령제 130 호</p> <p>종로구창신 2 동 이 일 제 지방행정서기</p> <p>강원도 동해시 전출을 명함.</p> <p>◎ 1983 년 4 월 16 일자 령제 131 호</p> <p>국회사무처경위과 김 태 일 행정주사</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 1983 년 4 월 12 일자 령제 132 호</p> <p>용 산 구 서 대 정 지방토목기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p> <p>동 대 문 구 장 관 진 지방지적기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p>	
인 영			
공인명	답심리제 2 동장인		

